

□ 외부강의등 사례 Q&A

1	질의	사례금 없는 무료 외부강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월3회 횟수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거하면 대가 없는 외부강의등도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전허가 대상이며, 다만 대가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전허가(○), 사후신고(x)] 또한, 대가가 없으므로 월3회 횟수에는 불포함.

2	질의	교재집필을 위한 원고집필료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건가요?
	답변	교재 집필 행위가 우리회 규정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지침 및 청탁금지법에 근거하면, 제3자에게 의견지식을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집필행위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지침에 근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전허가 대상이며, 다만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례 금액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및 제한에 적용받습니다. * [사전허가(○), 사후신고(x)], 월3회 횟수에는 불포함

4	질의	국립대학교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도 활동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지침 및 청탁금지법에 근거하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학교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등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5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공립 학교는 해당하나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질의	외부강의 일정이 1박2일일 경우 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1박2일의 외부강의등은 일자, 대상, 주제(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별개 횟수로 판단합니다.(2회)

7	질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제3자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8	질의	외부강의등의 제한에서 부득이하게 월3회 횟수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임직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에 앞서, 별도 서식(외부강의등 실시 초과사유서)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상근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공립 학교는 해당합니다.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10	질의	휴직 중인 직원의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회 소속된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휴직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그룹웨어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부서장 또는 업무대행자를 통해 결재 및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1	질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세후(稅後) 금액인가요?
	답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질의	직원A가 동일한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강의 과목은 같으나, 대상이 다른 강의(각각 3시간)를 요청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강의과목, 주제, 대상이 다르면, 각 1호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강의사례금은 1시간당 40만원이며, 한도 총액은 60만원 [40만원+(40만원*0.5)]이므로, 즉 각각 60만원 수수 가능합니다.

13	질의	직무와 관련없는 일반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그 직책, 지위에서 유래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 경우 직책에서 유래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14	질의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지식재산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질의	직무와 상관없는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직무와 관련이 없고,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질의	근무시간외 저녁 및 휴일 등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인가요?
	답변	우리회 규정(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관리 지침) 및 청탁금지법률 등에 근거하면,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입니다. 단,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